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1다209027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1다20902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2018나201071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2016가합52774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A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석상, 조은진

원고보조참가인 B

피고, 상고인 1. C

2. D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서동후, 임채웅, 차한성, 김득환, 이진우, 부광득, 박성용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2018나20107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5. 13.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이흥구